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4. 12.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서울특별시의회  
교 육 위 원 회

# 예비심사보고서

2014년 12월 1일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4. 10. 31
- 회부일자 : 2014. 11. 05
- 상정일자 : 2014. 12. 01
- 의결일자 : 2014. 12. 01 (제25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 2. 예산안 주요내용

### 가. 추경 규모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7조 4,391억 2천 9백만원보다 2,336억원이 증액된 7조 6,727억 2천 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1% 증가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추경예산(A)	2014년도 본예산(B)	비교증감	
				증감액(A-B)	비율(%)
총 규모		7,672,729	7,439,129	233,600	3.1%
세 입	중앙정부이전수입	4,584,719	4,534,407	50,312	1.1%
	자치단체이전수입	2,535,162	2,334,708	200,454	8.6%
	기타이전수입	12,193	6,110	6,083	99.6%
	자체수입	209,118	223,062	△13,944	△6.3%
	지방교육채	243,043	90,842	152,201	167.5%
	이월금	88,494	250,000	△161,506	△64.6%
세 출	인건비	4,824,537	4,808,096	16,441	0.3%
	기관운영비	37,272	40,835	△3,563	△8.7%
	학교운영비	636,784	658,216	△21,432	△3.3%
	교육사업비	1,628,762	1,534,776	93,986	6.1%
	시설사업비	229,907	267,414	△37,507	△14.0%
	지방교육채 및 BTL	307,562	121,887	185,675	152.3%
	예비비	7,905	7,905	0	0.0%

## 나.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계	자체재원	우선확정	
중앙 정부 이전 수입	보통교부금	4,426,557	4,534,407	△107,850	△107,850	-	
	특별교부금	139,209	-	139,209	-	139,209	
	국고보조금	18,953	-	18,953	-	18,953	
	계	4,584,719	4,534,407	50,312	△107,850	158,162	
자치 단체 이전 수입	법 정	지방교육세	1,162,440	1,128,479	33,961	33,961	-
		담배소비세	247,466	247,466	-	-	-
		시 도 세	971,261	936,801	34,460	34,460	-
		학교용지부담금	17,785	17,785	-	-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87,357	-	87,357	87,357	-
		계	2,486,309	2,330,531	155,778	155,778	-
	비 법 정	광역자치단체	42,352	4,177	38,175	-	38,175
		기초자치단체	6,501	-	6,501	-	6,501
		소 계	48,853	4,177	44,676	-	44,676
	계	2,535,162	2,334,708	200,454	155,778	44,676	
기타이전수입 (기타지원금)		12,193	6,110	6,083	-	6,083	
자 체 수 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45,004	145,000	4	4	-	
	행정활동수입	5,432	5,432	-	-	-	
	자 산 수 입	40,464	40,464	-	-	-	
	이 자 수 입	4,000	11,950	△7,950	△7,950	-	
	금융자산회수	30	30	-	-	-	
	기 타 수 입	14,188	20,186	△5,998	△5,998	-	
	계	209,118	223,062	△13,944	△13,944	-	
지방교육채		243,043	90,842	152,201	152,201	-	
기타(전년도이월금)		88,494	250,000	△161,506	△161,506	-	
합 계		7,672,729	7,439,129	233,600	24,679	208,921	

## 다. 세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계	자체재원	우선확정	
인 건 비	공 무 원 인 건 비	3,888,849	3,911,629	△22,780	△22,780	-	
	사립학교 인 건 비	935,688	896,467	39,221	39,221	-	
	계	4,824,537	4,808,096	16,441	16,441	-	
경 상 비	기 운 관 영 비	37,272	40,835	△3,563	△3,563	-	
	공립학교 운 영 비	573,106	597,962	△24,856	△24,856	-	
	사립학교 운 영 비	63,678	60,254	3,424	2,724	700	
	계	674,056	699,051	△24,995	△25,695	700	
사 업 비	교육사업비	1,628,762	1,534,776	93,986	△60,682	154,668	
	시 설 사 업 비	학 교 신증설	110,923	117,209	△6,286	△7,278	992
		일반시설	98,858	128,539	△29,681	△71,335	41,654
		급식시설	20,126	21,666	△1,540	△11,468	9,928
		소 계	229,907	267,414	△37,507	△90,081	52,574
		계	1,858,669	1,802,190	56,479	△150,763	207,242
지 방 채 및 BTL 상 환	지방교육채	194,814	8,893	185,921	185,921	-	
	BTL 상환	112,748	112,994	△246	△1,225	-	
	계	307,562	121,887	185,675	184,696	979	
예비비 및 기타		7,905	7,905	-	-	-	
합 계		7,672,729	7,439,129	233,600	24,679	208,921	

### 3. 제안설명 요지 (기획조정실장 김재금)

#### 가. 예산안 개요

- 201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1%가 증가한 7조 6,727억 2천 9백만원으로, 2013년도 교부금 및 전입금 결손으로 인한 재정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2,613억원을 절감하여 1,589억원의 세입결손을 보전하고 부족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 확보를 위해 세출예산 1,024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 2015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충격을 완화하고 이자부담이 큰 지방채를 저이율의 지방채로 차환하고자 1,83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된 목적지정 지원금 등 우선확정 사용분 2,089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음.

#### 나. 세입예산안에 대한 자원별 내역

-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1,589억원 감소하였고 목적지정 지원금 3,925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보통교부금과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79억원이 증액되었음. 세입 감소내역은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139억원, 2013년도 전입금, 교부금, 이월금 등 순세계잉여금 1,615억원, 교육부 지방교육채 발행승인액 313억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은 2,089억원이며, 지방교육채 차환금으로 1,835억원을 편성하였음.

## 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 세출예산은 초과근무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를 8.7% 절감하였고, 학교운영비는 적정교육비의 95.5% 적용하였으며, 교육사업비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평균 15% 절감하였고, 학교신설과 계속사업을 제외한 시설사업비는 70% 절감하는 등 2,6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음.
- 세출예산 추가소요 증액분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부족분, 교원연구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비,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방채 이자 상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인건비와 필수경비 1,024억원을 편성하였고, 용도가 지정된 목적지원금 2,089억원은 교육사업비 등 4개 분야에 우선확정, 집행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음.
- 2014년 본예산 사업 중 3개 사업에 대해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 1억 7천 5백만원과 거여고 토지매입비 30억원, 수송초 증개축 26억 8천만원 등 총 58억 5천 5백만원임.

### 2014년 명시이월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예산과목				사업명	명시이월 요구액	설명사항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1	교수학습 활동지원	진로진학 교육	진로진학 교육	자치단체 이 전	2014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175,000	센터 개소 추진이 지연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능
2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학생수용 시설	학교신설	토 지 매 입 비	학교신설 (거여고)	3,000,000	부지조성이 지체되어 연도 내 계 약 불가능
3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학교일반 시설	학교시설 증 개 축	시 설 비	학교시설증개축 (수송초)	2,680,739	지자체와 협의기간 지연 및 설계기간 장기 소요로 인하여 연도 내 집행 불가능
<b>총 계</b>						<b>5,855,739</b>	

####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연주)

##### □ 예산안 개요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503억 1천 2백만원, 자치단체이전수입 2,004억 5천 4백만원, 기타이전수입 60억 8천 3백만원 등 이전수입 2,568억 4천 9백만원에 지방교육채 1,522억 1백만원을 합한 4,090억 5천만원의 세입 증가분에서 자체수입 감소분 139억 4천 4백만원 및 전년도이월금 감소분 1,615억 6백만원을 감한 2,336억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 인건비 164억 4천 1백만원, 교육사업비 939억 8천 6백만원, 지방채 및 BTL 상환 1,856억 7천 5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기관운영비 및 공·사립학교운영비 249억 9천 5백만원, 시설사업비 375억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최근 5년간 추경규모>

(단위 : 천원)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본예산	6,315,817,715	6,616,502,054	7,116,287,160	7,368,893,000	7,439,129,000
1차 추경예산 증감액	602,935,615	386,632,495	546,373,112	433,747,026	233,599,985
2차 추경예산 증감액	-	-	-	-	-
최종예산 증감액	97,891,610	84,308,723	167,474,155	-	-
최종예산	7,016,644,940	7,087,443,272	7,830,134,427	7,802,640,026	7,672,728,985



## □ 세입예산

- 세입재원은 본예산 성립 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자치단체이전수입, 기관·협회 또는 단체들이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하는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및 전년도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입예산의 증가 규모는 총 2,336억원(▲3.1%)으로, 중앙정부가 이전수입 503억 1천 2백만원(▲1.1%), 자치단체이전수입 2,004억 5천 4백만원(▲8.6%), 기타이전수입 60억 8천 3백만원(▲99.6%), 지방교육채 1,522억 1백만원(▲167.5%)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수입 139억 4천 4백만원(△6.3%)과 전년도이월금 1,615억 6백만원(△64.6%)은 감액 편성되었음.
- 비록 세입예산이 2,336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용도가 지정된 세입증가분(우선확정사업+지방교육채=3,611억 2천 2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입규모는 오히려 1,275억 2천 2백만원이 감소된 것이므로 심각한 재정결함상황에 처해있다 하겠음.

### <우선확정사업 예산>

(단위 : 천원)

재원별	건수	우선확정액	비율
특별교부금	233	139,208,417	66.6%
국고보조금	16	18,953,130	9.1%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25	38,175,431	18.3%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20	6,500,598	3.1%
기타지원금	16	2,080,589	1%
자치단체간전입금	7	4,002,356	1.9%
합 계	317	208,920,521	100%

## ① 중앙정부이전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비 고
			계	자체재원	우선확정	
보통교부금	4,426,557,307	4,534,407,272	△107,849,965	△107,849,965	0	○ 2014년 확정교부
특별교부금	139,208,417	0	139,208,417	0	139,208,417	○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18,953,130	0	18,953,130	0	18,953,130	○ 저출산고령사회대비연수 등
계	4,584,718,854	4,534,407,272	50,311,582	△107,849,965	158,161,547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 중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은 1,581억 6천 2백만원으로 전체 세입 증가분의 67.7%를 차지함.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3항 및 제5조의2에 따라 보통교부금 외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는 경우, 재해로 인해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경우 등에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sup>1)</sup>
- 이러한 특별교부금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 연중 예측이 어렵게 교부될 뿐만 아니라 교육청 자체사업과의 중복성 등으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성립 전 예산으로 목적이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교부금 사업선정 및 교부방식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관하여 교육부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1) 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27/100) [96/100 ⇒ 보통교부금, 4/100 ⇒ 특별교부금]

- 국가시책사업수요 :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특별교부금의 60%)
- 지역교육현안수요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는 때(특별교부금의 30%)
- 재해대책수요 :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특별교부금의 10%)

## ② 자치단체이전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비 고
			계	자체재원	우선확정	
법정이전수입	2,486,303,676	2,330,530,722	155,777,954	155,777,954	0	○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48,853,029	4,177,000	44,676,029	0	44,676,029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42,352,4311	4,177,000	38,175,431	0	38,175,431	○ 에듀케어운영확대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6,500,598	0	6,500,598	0	6,500,598	○ 학교시설복합화사업 등
계	2,535,161,705	2,334,707,722	200,453,983	155,777,954	44,676,029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339억 6천 1백만원, 시도세전입금 344억 6천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873억 5천 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법정이전수입은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2014. 9. 30)된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2013년도 시세정산 및 취득세 정부보전분을 정산한 것임.

### <법정이전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역	
소 계		68,420,580
시세(보통세)	소 계	34,459,403
	시세정산금	18,916,646
	' 13년도 현년도 시세정산금	5,496,532
	' 13년도 전년도 시세정산금	13,420,114
	취득세 정부보전분 정산금	15,542,757
지방교육세	소 계	33,961,177
	시세정산금	18,418,420
	' 13년도 현년도 시세정산금	-3,276,540
	' 13년도 전년도 시세정산금	21,694,960
	취득세 정부보전분 정산금	15,542,757

※ 취득세 정부보전분 정산금은 '12.9.10대책, '13.4.1대책, '13.12.26대책 정부보전분이며, '14.2.27일 서울시로 세입조치 되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 “라” 목에 따라 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으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이 개정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원가통계목으로 신설되었음.

### ③ 기타이전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비 고
			계	자체재원	우선확정	
민간이전수입	8,190,589	6,110,000	2,080,589	0	2,080,589	○도서관 협회 지원금 등
자치단체간이전수입	4,002,356	0	4,002,356	0	4,002,356	
계	12,192,945	6,110,000	6,082,945	0	6,082,945	

#### <2014년 1차 추경 민간이전수입 현황>

(단위 : 천원)

지원기관	사업명	지원액
서울특별시체육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90,221
용강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염리초등학교 교실증축	992,122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인성교육인증프로그램활용	1,000
	평생학습프로그램공모사업운영	1,000
한국과학창의재단	행복학교박람회	5,000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과함께하는IT희망나눔운동	600
	문학작가과견사업	4,000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교실운영	37,730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시설및단체지원사업	15,000
한국정보화진흥원	교수학습플랫폼및학습분석기술개발	800,000
다우인큐브, 솔트룩스	교수학습플랫폼및학습분석기술개발	33,916
합 계		2,080,589

- 전체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중앙정부이전수입, 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은 2,568억 4천 9백만원으로 편성된 반면에 자체수입 규모는 139억 4천 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세입재원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 하겠음.

#### ④ 자체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비 고
			계	자체재원	우선확정	
교수학습활동수입	145,003,650	145,000,000	3,650	3,650	0	
기본적교육수입	142,355,283	145,355,283	0	0	0	
선택적교육수입	2,648,367	2,644,717	3,650	3,650	0	
행정활동수입	5,432,000	5,432,000	0	0	0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5,432,000	5,432,000	0	0	0	
자산수입	40,464,000	40,464,000	0	0	0	
자산임대수입	489,920	489,920	0	0	0	
자산매각대	39,974,080	39,974,080	0	0	0	
이자수입	4,000,000	11,950,006	△7,950,006	△7,950,006	0	
이자수입	4,000,000	11,950,006	△7,950,006	△7,950,006	0	
금융자산회수	30,000	30,000	0	0	0	
보증금회수	30,000	30,000	0	0	0	
기타수입	14,188,114	20,186,000	△5,997,886	△5,997,886	0	
제재금수입	547,477	547,477	0	0	0	
기타수입	13,000,000	18,997,886	△5,997,886	△5,997,886	0	
과년도수입	640,637	640,637	0	0	0	
계	209,117,764	223,062,006	△13,994,242	△13,994,242	0	

- 교육청 산하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은 3천 6백만원 증가한 반면에 이자수입은 79억 5천만원, 학교회계 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한 기타수입은 59억 9천 7백만원이 감액되어 자체수입은 총 139억 9천 4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이러한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자체수입마저 감소하는 추세라면 향후 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있어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2010 ~ 2013년도 세입결산서 기준 교육비특별회계와 이자수입의 실제수납액>**

(단위 : 천원)

	2010	2011	2012	2013
세입결산(수납액)	7,119,817,045	7,372,173,425	8,056,769,625	8,171,202,534
이자수입(비율)	13,279,416 (0.19%)	11,409,840 (0.15%)	19,146,309 (0.24%)	14,909,420 (0.18%)

- 교육청은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이전수입에 의존하면서도 4년간 평균 146억 8천 6백만원(0.19%)의 이자수입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나, 은행의 금리하락, 이월금(순세계잉여금) 감소 및 유희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79억 5천만원이 감액된 40억원만이 이자수입으로 편성되었음.
-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의 증대는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바, 교육청은 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조기 확보, 자체수입금의 적기 징수, 자금통합관리 강화 등의 자금운용방법을 개선해 자금의 수요예측을 장기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이율이 높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장기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⑤ 지방교육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비 고
			계	자체재원	우선확정	
지방교육채	243,043,845	90,842,200	152,201,845	152,201,845	0	
계	243,043,845	90,842,200	152,201,845	152,201,845	0	

-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차입하는 ‘교육활동을 위한 지방채’로서,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제12조와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세입재원이며, 특정한 사업에만 용도를 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정재원임.
- 교육청이 조세수입을 통하여 확보한 금액 보다 많은 액수의 지출을 해야 할 경우 증권의 발행이나 증서차입을 통해 유입한 공공자금 또는 민간자금은 결국 교육감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지방채증권이나 차입금 형식의 채무라는 점에서 그 발행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교육채 차환(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은 2009년 발행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1,835억 2천 9백 만원을 조기상환함으로써 연이율 4.85%의 고금리 이자부담 및 2015년도 원금 상환 개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을 감안한다면 합리적인 조치라 하겠음.

## ⑥ 전년도이월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비 고
			계	자체재원	우선확정	
순세계잉여금	88,493,872	250,000,000	△161,506,128	△161,506,128	0	
계	88,493,872	250,000,000	△161,506,128	△161,506,128	0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결산 잉여금 중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 다음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결산전 당해연도에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음.

### <2010~2014 순세계잉여금 반영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본예산액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액	직전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규모
2010	6,315,817,715	30,571,799	370,898,818
2011	6,616,502,054	300,000,000	310,010,078
2012	7,116,287,160	49,864,032	223,621,992
2013	7,368,893,000	150,000,000	304,383,791
2014	7,439,129,000	250,000,000	88,493,872
평 균		156,087,166	302,228,670

- 교육청의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은 약 3,000억원 규모였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년도 전입금 결손분 814억 5백만원, 교부금 결손분 292억 3천 2백만원, 이월금 감소분 508억 6천 9백만원을 합한 1,615억 6백만원이 감액되어 884억 9천 3백만원만이 편성되었음.



-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액편성은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교육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세출 요인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맞물려 현재와 같은 세입·세출구조를 지속하게 된다면 교육재정의 열악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교육청은 우선 경기 여건에 따른 세수 변화 등의 유동적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관련법령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음.
- 또한 2013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884억 9천 3백만원 중 14억 8천만원은 연말에 추가세입 된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늦게 교부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용도가 지정된 의존재원을 100% 불용처리하여 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됨으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013년 특별교부금 불용예산 중 2014년 추경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교부일 (2013)	교부액	불용액	편성액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지원	03-07	1,502	65	7
학교독서교육진흥	12-20	15	15	15
예술교육활성화	12-20	1,465	1,465	1,465
소 계		2,982	1,545	1,487

※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으로 2014년 감교부 예정이었으나, 사업이 2015년 교육부 일몰사업에 해당되어 일부금액 2014년 추경에 편성되었음.

## □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사립학교인건비 392억 2천 1백만원(▲4.4%), 사립학교운영비 34억 2천 4백만원(▲5.7%), 교육사업비 939억 8천 6백만원(▲6.1%), 지방교육채상환 1,859억 2천 1백만원(▲2,090.7%)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무원인건비 227억 8천만원(△0.6%), 기관운영비 35억 6천 3백만원(△8.7%), 공립학교운영비 248억 5천 6백만원(△4.2%), 시설사업비 375억 7백만원(△14%), BTL상환 2억 4천 6백만원(△0.2%)은 감액 편성되었음.
- 이번 세출예산 증가분은 총 2,336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방교육채상환 1,859억 2천 1백만원과 우선확정사업 2,089억 2천 1백만원은 목적이 지정된 재원이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감소로 인한 긴축재정운영의 필요성으로 세출예산 증가분을 맞추기 위해 자체재원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짜맞추기식 세출예산안이라 평가할 수 있겠음.
- 특히,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할 경우에는 결산 시 예산집행의 사후 평가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바, 예산의 편성 시에는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세입감소로 인한 세출증가분의 보전을 위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분석 없이 모든 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절감목표를 설정한

후 재정을 긴축운영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재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부득이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세입·세출 구조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이는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고, 예산의 목적과 계획성 등에 비추어서도 결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자원 의존성의 축소, 자체수입의 증대, 정확한 교육재정분석 체계의 구축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14년도 추경 세출예산 절감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4 본예산 (A)	부동의 예산액 (B)	자체 절감액 (C)	절감액 누계 (D=B+C)	절감율(%) (D/A)*100
인건비	4,808,095,780	0	22,779,956	22,779,956	0.5
기관운영비	40,835,295	68,000	3,498,779	3,566,779	8.7
학교운영비	658,215,909	4,006,972	30,986,390	34,993,362	5.3
교육사업비	1,534,775,993	6,668,226	96,252,198	102,920,424	6.7
시설사업비	267,413,863	36,256,697	59,567,409	95,824,106	35.8
지방교육채 및 BTL	121,887,128	0	1,224,498	1,224,498	1.0
예비비	7,905,032	0	0	0	0.0
합 계	7,439,129,000	46,999,895	214,309,230	261,309,125	3.5

##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비 고
			계	자체재원	우선확정	
교원인건비	3,256,375,307	3,268,804,307	△12,429,000	△12,429,000	0	
지방공무원인건비	403,113,746	403,466,746	△353,000	△353,000	0	
교육전문직원인건비	42,931,819	42,955,319	△23,500	△23,500	0	
계약제교원인건비	178,047,007	186,441,786	△8,394,779	△8,394,779	0	
계약제직원인건비	8,380,918	9,960,595	△1,579,677	△1,579,677	0	
인건비재정결합지원	935,688,004	896,467,027	39,220,997	39,220,997	0	
합 계	4,824,536,801	4,808,095,780	16,441,041	16,441,041	0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 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생긴 경비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 및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기본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함.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맞춤형복지포인트를 37억 6천 8백만원 감액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러한 조치는 현재 교육청의 증가된 세출규모를 감당하기 위한 부득이한 재원마련 방안 이라는 점에서 재정운영상황의 현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음.
-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합지원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의 시 50억원이 삭감되었던 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에 기초하여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없겠으나,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중학교, 사립 특수학교와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는 사립고등학교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경우 인건비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음.

- 최근 4년간 교육청의 인건비 및 복지예산 증가액은 전체예산 증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교육 복지사업을 제외한 교육사업비 및 시설사업비의 감소는 교육여건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더욱이 의존재원성이 강한 교육청의 세입구조상 인건비와 같은 고정적 지출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축소·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증가하는 세출규모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보통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특별교부금을 축소하여 보통교부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거나, 누리과정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등 교육재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예산 기준 인건비 및 복지예산 증가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 체 예 산 (증가액)		66,165	71,163 (4,998)	73,689 (2,526)	74,391 (702)
인 건 비 및 복지예산	인 건 비	44,259	46,267 (2,008)	47,695 (1,428)	48,081 (386)
	복지예산	4,284	6,284 (2,000)	9,572 (3,288)	10,761 (1,189)
	소계 (증가액)	48,543	52,551 (4,008)	57,267 (4,716)	58,842 (1,575)
시 설 사 업 비 (증감액)		4,946	5,427 (481)	3,356 (△2,071)	2,674 (△682)

## ② 경상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비 고
			계	자체재원	우선확정	
기관운영비	37,272,166	40,835,295	△3,563,129	△3,563,129	0	
학교운영비지원	573,106,285	597,961,891	△24,855,606	△24,855,606	0	
운영비재정결함지원	63,676,902	60,254,018	3,422,884	2,722,884	700,000	
계	674,055,353	699,051,204	△24,995,851	△25,695,851	700,000	

○ 학교운영비지원과 운영비재정결함지원의 중학교 교원연구비 128억 6천만원(공립학교 94억 1백만원, 사립학교 34억 5천 9백만원)은 지난 2012년 8월 23일, 공립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금지되어 2013년 3월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음. 이 후 교원연구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지연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였다가 지난 2014년 4월 29일자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9조가 신설되어 교원연구비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게 되었음.

○ 그동안 중등교원에게 지급되던 학교운영지원비는 옛 육성회비가 지난 1997년 완전 폐지되면서 교원연구비·학생지도비·직책연구비 등으로 존속하여 온 것으로 현행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은 “교육감은 교원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교육연구비의 지원은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므로, 비록 중학교 교원연구비가 수당성격의 교육연구비용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우선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보통교부금 산정시 반영하든가 국고보조금을 활용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③ 교육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액	비 율	2014년	증감내역			
			본예산액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우선확정
교수학습활동지원 -독서교육, 학력향상 등	142,882	8.80%	100,009	42,873	42.90%	△15,571	58,444
과학·외국어·정보화 -과학·영재, 외국어, ICT활용교육 등	81,018	5.00%	60,272	20,746	34.40%	△4,743	25,489
유아·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	70,478	4.30%	70,572	△94	△0.1%	△3,709	3,615
생활·진로·상담지도 -생활지도, 폭력예방, 진 로진학 등	34,042	2.10%	28,259	5,783	20.50%	△4,918	10,701
인적자원운용 -교직원 역량강화, 문화 예술지원 등	31,585	1.90%	31,695	△110	△0.3%	△700	590
보건·급식·체육활동 -무상급식, 보건, 체육대 회 등	304,739	18.70%	271,346	33,393	12.30%	25,280	8,113
평생·직업교육 -평생·직업교육, 특성화 고 지원	36,476	2.30%	34,571	1,905	5.50%	△6,510	8,415
교육복지지원 -누리과정, 방과후학교, 교과서 등	853,978	52.40%	861,671	△7,693	△0.9%	△44,096	36,403
교육활동지원 -교육행정정보화, 선거 경비 등	73,564	4.50%	76,381	△2,817	△3.7%	△5,715	2,898
합 계	1,628,762	100%	1,534,776	93,986	6.10%	△60,682	154,668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교육사업비 증가규모는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증가규모의 40.2%인 939억 8천 6백만원으로, 이 중 공립초 조리종사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285억 6천 3백만원)와 특성화고 무상교육비 부족분(98억 9천 8백만원) 등 무상교육 지원이 교육사업비 증가규모의 40.9%를 차지하고 있음. 다만, 우선확정 사업은 1,546억 6천 8백만원 증액 편성된 반면에 자체재원은 오히려 606억 8천 2백만원 감액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반영하는 편성이라 할 수 있겠음.
- 교육사업비 중 2014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285억 6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여전히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분담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간의 이견(異見) 차이가 그 원인이라 하겠음.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함은 물론 안정적 무상급식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까지 양 기관 간에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특성화고무상교육비지원 사업은 당초 2014년도 본예산 심의·확정 시에는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간의 대응투자비율이 50:50이었으나 이 후 30:70으로 조정됨에 따라 부득이한 추가 소요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임. 다만, 대응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빈번한 분담률 조정 또는 분담률의 유동적 상황은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게 되고 자칫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편성 전에 분담률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업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의하여야 할 것임.



### <대응투자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예산교부(지원)액				대응투자기준비율	교 특 대응투자기준액 (a)	대응투자액(교특)			
	국가	자치단체		기타			계	기확보액 (b)	추경중감액 (c)	계 (d=b+c)
		광역시	기초							
특성화고 무상교육비 (수업료)	13,256				13,256	7 : 3 (교특: 교육부)	30,931	23,156	7,775	30,931
<b>합계</b>	<b>13,256</b>				<b>13,256</b>		<b>30,931</b>	<b>23,156</b>	<b>7,775</b>	<b>30,931</b>

### ④ 시설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본예산액	증감내역		
			계	자체재원	우선확정
<b>일반시설비</b>	<b>209,780,730</b>	<b>245,747,724</b>	<b>△35,966,994</b>	<b>△78,612,869</b>	<b>42,645,875</b>
학교신증설	110,922,365	117,208,486	△6,286,121	△7,278,243	992,122
학교시설증개축	14,657,088	13,037,281	1,619,807	△3,230,180	4,849,98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80,005,817	110,269,040	△30,263,223	△65,006,889	34,743,666
본청시설관리	75,000	115,000	△40,000	△40,000	0
지역교육청시설관리	1,042,200	2,008,200	△966,000	△966,000	0
직속기관시설관리	3,078,260	3,109,717	△31,457	△2,091,557	2,060,100
<b>급식시설비</b>	<b>20,126,468</b>	<b>21,666,139</b>	<b>△1,539,671</b>	<b>△11,467,671</b>	<b>9,928,000</b>
학교급식환경개선	20,126,468	21,666,139	△1,539,671	△11,467,671	9,928,000
<b>계</b>	<b>229,907,198</b>	<b>267,413,863</b>	<b>△37,506,665</b>	<b>△90,080,540</b>	<b>52,573,875</b>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설사업비는 학교신증설 62억 8천 6백만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2억 6천 3백만원, 학교급식환경개선 15억 3천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4%가 감액된 총 2,299억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시설사업비의 자체재원 감액분은 900억 8천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심의시 부동의 된 362억 5천 6백만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고, 우선확정 사업과 긴급·위험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되었음.

**<최근 5년간 추경편성시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비율>**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비율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2009년도	본예산	573,404,516	737,487,541	128.6%
	1차 추경예산	638,012,907	952,650,447	149.3%
	2차 추경예산	724,875,971	1,048,823,307	144.7%
	최종예산	811,473,068	1,086,209,022	133.9%
2010년도	본예산	653,430,933	683,576,234	104.6%
	1차 추경예산	855,225,606	943,413,428	110.3%
	최종예산	913,009,861	983,106,199	107.7%
2011년도	본예산	899,337,139	494,585,577	55.0%
	1차 추경예산	1,081,315,522	605,679,218	56.0%
	최종예산	1,152,939,957	617,506,928	53.6%
2012년도	본예산	1,159,883,316	542,721,120	46.8%
	1차 추경예산	1,407,116,520	752,130,228	53.5%
	최종예산	1,547,042,906	775,434,717	50.1%
2013년도	본예산	1,174,156,662	335,618,441	28.6%
	1차 추경예산	1,587,160,283	517,828,211	32.6%
2014년도	본예산	1,534,775,993	267,413,863	17.4%
	1차 추경예산	1,628,760,796	229,907,198	14.1%

- 최근 5년간의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의 재정투입 비율을 분석하여 보면 시설사업비 규모가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교육사업비의 14.1%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음. 그 주요원인은 고정적 지출의 교육복지사업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세입규모의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시설사업비에 투입할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임. 특히, 학교신증설, 학교시설증

개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및 학교급식환경개선 등은 학생수용 및 학교안전 등 교육여건의 질적 개선과 직접 관련된 사업인 만큼 적재적소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업비간 예산 편중 심화로 인하여 불균형만 가중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 하겠음. 따라서 교육청은 안정적인 시설사업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 ⑤ 지방채 차환

- 지방채 차환 1,835억 2천 9백만원은 2009년 발행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를 조기상환함으로써 연이율 4.85%의 고금리 이자 부담 및 2015년도 원금 상환 개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지방교육채 차환으로 인한 이자 절감액은 159억 5천 9백만원으로 예상됨.

<지방교육채 차환으로 인한 이자 절감액 분석자료>

(단위 : 천원)

연도	차환 전 이자금액		차환 후 이자금액				비고
	지방채 잔액	이자금액 (4.85%)	지방채 잔액	이자금액 (3.18%)	추가 거치기간 이자금액 (3.18%)	합계	
2015	180,139	8,737	183,529		5,836	5,836	거치기간 추가(5년)
2016	162,125	7,863	183,529		5,836	5,836	거치기간 추가(5년)
2017	144,111	6,989	183,529		5,836	5,836	거치기간 추가(5년)
2018	126,097	6,116	183,529		5,836	5,836	거치기간 추가(5년)
2019	108,083	5,242	183,529		5,836	5,836	거치기간 추가(5년)
2020	90,069	4,368	183,529	5,836		5,836	
2021	72,055	3,495	165,176	5,252		5,252	
2022	54,041	2,621	146,823	4,668		4,668	
2023	36,027	1,747	128,470	4,085		4,085	
2024	18,013	874	110,117	3,501		3,501	
2025			91,764	2,918		2,918	
2026			73,411	2,334		2,334	
2027			55,058	1,750		1,750	
2028			36,705	1,166		1,166	
2029			18,352	583		583	
합계		<b>48,052</b>	40,613	<b>32,093</b>	29,181	61,274	

※ 발행시점에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 조정이 될 수 있음.

## □ 기타 검토의견

### ○ 감액편성 내역

#### <세부사업별 자체재원 순수감액 내역>

(단위 : 천원)

주관부서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본예산	절감
감사관	감사관리	215,848	246,802	△30,954
공보담당관	교육정책홍보	1,457,177	1,602,557	△145,380
과학전시관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1,795,504	2,141,306	△345,802
교원정책과	교원임용관리	2,546,098	2,792,997	△246,899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자료개발보급	169,420	230,320	△60,900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지원	54,211,396	54,242,832	△31,436
교육복지담당관	교직원단체관리	236,397	295,762	△59,365
교육복지담당관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26,577,258	31,400,925	△4,823,667
교육복지담당관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51,648,382	55,509,858	△3,861,476
교육복지담당관	정보화지원	6,705,320	7,299,855	△594,535
교육복지담당관	토·공휴일중식지원	5,399,400	5,799,600	△400,200
교육시설과	시설사업관리	16,063,028	16,613,399	△550,371
교육시설과	지역교육청시설관리	1,042,200	2,008,200	△966,000
교육시설과	본청시설관리	75,000	115,000	△40,000
교육연구정보원	교과교육연구회지원	306,420	438,030	△131,610
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1,105,606	1,380,694	△275,088
교육연수원	교원연수운영	2,861,280	3,395,059	△533,779
교육연수원	지방공무원연수운영	744,535	932,368	△187,833
교육재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734,675	1,883,284	△148,609
교육재정과	결산관리	65,650	77,050	△11,400
교육재정과	재무회계관리	384,776	479,246	△94,470
예산담당관	본청운영	5,323,111	5,684,883	△361,772
예산담당관	지역교육청운영	7,707,019	8,577,131	△870,112
예산담당관	계약제교원인건비	178,047,007	186,441,786	△8,394,779
예산담당관	계약제직원인건비	8,380,918	9,960,595	△1,579,677
예산담당관	교원인건비	3,256,375,307	3,268,804,307	△12,429,000
예산담당관	대외교육협력관리	7,140	8,400	△1,260
예산담당관	비정규직인사관리	40,200	47,330	△7,130
예산담당관	교육전문직원인건비	42,931,819	42,955,319	△23,500
예산담당관	지방공무원인건비	403,113,746	403,466,746	△353,000
유아교육과	기타교육비지원	1,289,376	1,395,360	△105,984
유아교육과	누리과정지원	523,419,571	547,335,882	△23,916,311
유아교육과	사립유치원지원	33,390,000	34,142,000	△752,000
중등교육과	영재교육원운영	3,759,315	4,327,165	△567,850
중등교육과	학교평가관리	581,775	678,310	△96,535
중등교육과	ICT활용교육지원	298,740	464,240	△165,500
진로직업교육과	마이스터고운영지원	2,220,000	2,300,000	△80,000
진로직업교육과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1,874,300	2,255,300	△381,000
체육건강청소년과	체육육성종목지원	163,780	386,280	△222,500
체육건강청소년과	학생봉사활동지원	102,300	111,500	△9,200
총무과	교직원복지대여	358,907	474,867	△115,960
총무과	민원관리	663,589	720,245	△56,656
총무과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94,457	115,121	△20,664
총무과	선거관리	23,986,654	24,915,527	△928,873
총무과	지방공무원연수지원	443,454	880,705	△437,251
총무과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97,662	220,535	△22,873
총무과	지방공무원임용관리	870,190	1,070,485	△200,295
총무과	행정서비스관리	1,475	5,500	△4,025
학교생활교육과	검정고시관리	698,852	699,898	△1,046
학교지원과	사학기관관리	56,279	62,660	△6,381
행정관리담당관	행정개선헌동지원	28,630	38,980	△10,350
행정관리담당관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264,890	322,950	△58,060
행정관리담당관	법무관리	637,828	750,328	△112,500
행정관리담당관	의정활동지원	49,400	70,500	△21,100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구조를 보면 부족한 세입재원으로 인하여 세출증가분을 감당할 수 없음에 따라 임의적으로 세출규모를 재조정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겠음. 물론 이러한 세출재조정은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라 하겠지만, 현재의 국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 목적지정 우선확정사업의 집행율 문제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지정 우선확정사업은 총 367건으로, 총 2,089억 2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우선확정사업은 본예산 심의·확정 후 국고보조금, 교육부 특별교부금, 광역·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기타지원금 등이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되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심의 이전에 우선확정하여 사용되는 사업인 바,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우선확정사업은 201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부된 사업을 반영한 것임.
- 다만, 우선확정 후의 사업별 예산 집행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 까지 집행율이 50% 이하인 사업이 304건이고, 이 중 집행율이 0%인 사업도 201건에 이르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비 교부시기가 2월에서 9월에 사이에 교부되어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고 연도 말에 집중집행하는 것은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교육청은 목적지정 우선확정사업의 경우 적기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비록 교육부 및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열악한 교육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각종 전입금을 지원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가능한 한 예산안에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 gender responsive budgeting, gender sensitive budget)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과정에 성인식(gender awareness) 및 성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 12개(160억 9천 3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314억 2천 1백만원), 교육부지정사업 14개(709억 6천 6백만원)의 총 32개 사업에 대해

여 본예산 대비 178억 6천 9백만원이 증액된 1,184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음.

**<성인지예산 증액 사업 목록>**

(단위 : 천원)

사업명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추경예산안	본예산	증액규모	재원
예술교육활성화	교육부 지정사업	354,000	0	354,000	특별교부금
과학교육활성화	여성정책 추진사업	242,000	0	242,000	특별교부금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교육부 지정사업	11,200,000	0	11,200,000	특별교부금
영어교사심화연수지원	교육부 지정사업	559,742	0	559,742	특별교부금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여성정책 추진사업	2,734,677	0	2,734,677	특별교부금
스포츠강사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756,578	16,792,186	964,392	일반재원
학교체육내실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270,080	0	1,270,080	특별교부금
화장실개선	교육부 지정사업	10,329,185	1,873,000	8,456,185	지방보조금
<b>합 계</b>		<b>44,446,262</b>	<b>18,665,186</b>	<b>25,781,076</b>	

- 특별보조금 사업 등의 우선확정사업을 제외하면 오히려 79억 1천 2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세출규모를 축소한 사업이 대부분이라 하겠음.
- 또한 스포츠강사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액사업은 모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나 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자체추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성별수혜분석기법의 개발 및 성별통계와 분석의 기법등을 완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붙임)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  
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의결내역



<붙임>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원회 심사·의결내역  
(2014. 12. 01)

□ 총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교육위 심사·의결내역	증감금액
세 입	7,672,728,985	7,672,728,985	0
세 출	7,672,728,985	7,672,728,985	0